

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(제38조 관련)

구 분	자 격 기 준
1. 공공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수질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토목산업기사,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.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. 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

비고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